

모도	요	불요
바	번	자료제공, 목집, 퇴권(설명)
사행상		
특별취급		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6)

분류기호	설 30310-70	시	장
문서번호	설 30310-70	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7. 1		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	협조 기관	방무담당관 설사필 협조 통제관 행정과장 저적과장
기안책임자	정영환 (경 24)		
경유 수신 참조	추안참조	발신 명	시장
제 목	도시계획시설(하천) 변경결정 및 저적승인(시공)		
제 1 안 : 내부결재	1987. 1. 19		
<p>1. 을도 30310-593 (86. 10. 23) 호와 관련 하이다</p> <p>2. 위호와 관련 우리시관내 강동구 소중동일대 성내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올림의 특목담당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하천) 변경결정 및 저적승인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바 86. 10. 7 결정 및 저적승인된 사항으로 하천 제방추도이 마루 제방도로와 기존 가랑도지구획지리사면구경내 포함시설의 도로와 연결을 위하여 성내천 일구간의 하천통을 조정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년 제2호, 제13호 및 도시계획 제6호, 제7호의 2에 의거 결안과 같이 시행 하이다</p>			



첨부: 카인서류 1건

과장 인사: 87.1.16 제 17 호
담당자: 서의장 방무담장관

제 2 안 : 고 시 안

김 동 의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

도시계획시설 (하천) 변경결정 및 지정승인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도시계획법 제13조1항 및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내용 및 제7조가 2의 규정이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정승인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의한다

2. 관내도면은 도시계획구 시설계획과 및 정류구, 화장기비과, 시민공사설이 지적하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7. 1

서울특별시감

· 시설도서

구분	시행명	위치	규모	비고
기정	하천	강동구 동남동 36-10 ~ 동남동 36-296-1	B=30~120" L=5000"	
변경	"	"	"	인위구간 (1248) 하천통조장

별첨도면포시와 같은 (시행생략)

제 3 안

관지
887.1.17

도시계획법

수 신 : 건설부장관

제 목 : 같 음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
고시 하겠으니 보드립니다.
첨부: 고시문 사본 1부 및 관계도면 2부.

제 4 단

수 신 : 총무처장관

제 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합니다
가. 게재 구분 : 고 시
나. 게재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하천) 변경결정 및 지각승인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
라. 게재 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 부 : 고시문 사본 2부

제 5 단 -45

수 신 : 올림픽특목감광관

발신 : 과감

제 목 : 같 음

1. 올림 3:310-573(86.12.23) 호와 관련 인니다

2 위로 요청하신 세부청 업무반에 대한 타계회시절	
(하)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및 자정승인 하등이 통보하	
관련업무에 참고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
첨부: 과사무실 및 도면각 1부	
제 6 안	
수	신: 경동구청장 (도시개발과장)
제	목: 끝 음
1. 구관내 타계회사항이 별첨과 같이 되맞기 통보하여	
관련업무 정리하여 타계회 관련 업무에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첨부: 과사무실 및 도면각 1부	
제 7 안 - 1/5	
수	신: 수산차장도 발신: 과장
제	목: 끝 음
1. 구시관내 타계회사항이 별첨과 같이 되맞기	
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	
첨부: 과사무실 및 도면각 1부 - 끝	
수원처: 치수과장, 타계회과장, 자정과장	